

---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설명자료

---

2022. 1. 24.

양형위원회

---

##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논의 배경

●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① 형의 종류 선택 및 ② 형량 산정 시 양형 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형의 종류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 제시가 부족함

● 실무와 사회에서도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함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각급 법원)
- 모든 범죄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1) 가장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있는 범죄, 혹은 2) 해당 범죄의 유죄 건수 중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일정한 건수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
- 기업범죄적 성격의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논의 경과

---

- 2021. 6. 7. 제110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1. 12. 6. 제113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기본 원칙, 형종 선택,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심의
- 2022. 1. 24. 제114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중 적용 범위, 설정 대상 범죄군 심의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확정 의결
- 2022. 1. ~ 2022.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 예정
- 2022. 2. 25.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2.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최종 의결 예정

####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절차

-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2021. 4. ~ 2022. 4.)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결정하고, 그 설정 원칙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2022. 4. ~ 2023. 4.)에 구체적인 범죄군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진행함
-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방안으로는 ①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의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②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③ 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을 모두 제시

---

하는 방안이 가능하고, 각각의 경우에 ㉠ 전체 범죄군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 개별 범죄군별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설정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선거범죄는 구공판 기소되고 합의부에서 재판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유형 분류, 양형인자 등)에 관하여 충분한 법정공방이 가능함. 그런데 벌금형 양형기준을 구약식 사건(벌금형은 약식명령 70~80%, 판결 20~30%로 약식명령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적용한다면 구약식 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 과정에서 실무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소 방식(구약식 기소인지 구공판 기소인지)에 따라 벌금형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
- 법인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의 경우, 양벌규정의 해석상 문제,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 원칙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함
-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설정 방안에 따라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를 비롯한 방대한 조사 역시 필요함

(이하 여백)

## II. 비교법적 검토

### 1.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 양형기준

#### ■ 총론

- 범죄군별 개별 규정
- 법률에서 벌금에 피고인 경제력을 반영하도록 정하기에 양형기준에서도 A(주당 소득 25-75%) - F(주당 소득의 500-700%) 총 6개 군 분류
- 벌금은 범죄자가 범행으로 얻은 모든 경제적 혜택(economic benefit)을 박탈하여야 하고, 처벌과 예방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
-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 사회형<sup>1)</sup> > 구금형 순서로 선택할 수 있음을 정하되, 일응 사회형의 최소 기준을 넘었어도 그보다 벌금형으로 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권고

#### ■ 각론

- 범죄군 100개 이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알코올 농도			시작점	범위	면허 결격	
호흡 ( $\mu$ g)	혈액 (mg)	소변 (mg)			일반	10년 내 재범
120-150+	276-345+	367-459+	구금 12주	사회명령(상) - 구금 26주	29-36개월 (즉시 구금이면 연장)	36-60개월

1) 사회봉사, 외출 제한, 수강 등 일정한 의무를 사회(communitiy) 안에서 이행하도록 명령(order)하는 처벌이고, 불이행하면 의무 내용을 바꾸거나, 구금형으로도 변경할 수 있음

90-119	207-27 5	275-36 6	사회명령(중)	사회명령(하) - 사회명령(상)	23-28개월	36-52개월
60-89	138-20 6	184-27 4	벌금 C군	벌금 C군 - 사회명령(하)	17-22개월	36-46개월
36-59	81-137	108-18 3	벌금 C군	벌금 B군 - 벌금 C군	12-16개월	36-40개월

- 유형별로 ① 시작점, ② 형량 범위를 정하면서, 벌금형 등 규정

## 2. 미국 연방 양형기준

### ▣ 총론

- 범죄군 전체를 일률적·통일적 규정
- 상한은 통상 하한의 10배

범죄 수준	A / 하한	B / 상한
3 이하	\$200	\$9,500
4-5	\$500	\$9,500
6-7	\$1,000	\$9,500
8-9	\$2,000	\$20,000
10-11	\$4,000	\$40,000
12-13	\$5,500	\$55,000
14-15	\$7,500	\$75,000
16-17	\$10,000	\$95,000
18-19	\$10,000	\$100,000
20-22	\$15,000	\$150,000
23-25	\$20,000	\$200,000
26-28	\$25,000	\$250,000
29-31	\$30,000	\$300,000
32-34	\$35,000	\$350,000
35-37	\$40,000	\$400,000
38 이상	\$50,000	\$500,000

■ 각론

**제2장 A 제2.2조(가중 폭력 / aggravated assault)**

(a) 기본 범죄 수준: **14**

(b) 범죄별 특성

- (1) 폭력이 최소한의 계획 이상을 포함하면, **2** 수준 증가
- (2) (A) 총기를 발포하였으면, **5** 수준 증가, (B) 위험한 무기(총기 포함)를 다른 방식으로 썼으면, **4** 수준 증가, (C) 위험한 무기(총기 포함)를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데에 썼으면, **3** 수준 증가
- (3) 피해자가 신체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의 중대성에 따라 범죄 수준을 높인다.

	신체 상해 정도	수준 증가
(A)	신체 상해	<b>3</b> 추가
(B)	중대한 신체 상해	<b>5</b> 추가
(C)	영구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상해	<b>7</b> 추가
(D)	상해 정도가 (A), (B) 사이이면, <b>4</b> 수준 추가	
(E)	상해 정도가 (B), (C) 사이이면, <b>6</b> 수준 추가	

그러나 (2), (3)에 따른 누적은 **10**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4) 배우자, 연인, 교제 상대방의 목을 조르거나, 해당인을 질식시키거나, 이를 시도하였으면, **3** 수준 증가

그러나 (2), (3), (4)에 따른 누적은 **12**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5) 금전 등 가치의 지급 또는 제안에서 비롯한 폭력이면, **2** 수준 증가
- (6)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하였으면, **2** 수준 증가
- (7) 피고인에게 연방 법전 제18편 제111조 (b)항, 제115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였으면, **2** 수준 증가

(이하 여백)

---

### Ⅲ.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상세 설명

#### 1. 기본 원칙

##### ▣ 설정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형기준 설정

-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에 고려할 일정한 원칙을 수립해 두고, 이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함
-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 결정 시, 전반기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의결하고, 후반기에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제8기 양형위원회가 전반기에 의결하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은 제8기 양형위원회 하반기 작업뿐만 아니라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원칙임

##### ▣ 범죄군별로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함

- 징역형 양형기준(선거범죄에 관한 벌금형 양형기준 포함) 설정 방식은 범죄군별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영국식)을 택하였음
- 범죄군 전체에 관한 일률적·통일적 양형기준(미국식)은 각 범죄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형위원회 설립 후 14년간 이어온 양형기준 체제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벌금형 양형기준의 일률적·통일적 설정은 급격한 업무 변경과 가중을 동반하므로 적절하지 않음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1] -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

## 2.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 벌금형 양형기준에는 형종 선택 원칙 포함

#### ● 입법 취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당초 양형기준 제도를 도입할 때 형량뿐 아니라, ‘형의 종류’를 선택할 양형기준도 설정, 적용함을 전제로 해당 조항을 신설
- 2007년 양형위원회 설립 이래 14년간 징역형·금고형 중심으로 형량 기준만 설정해온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형종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고려에서 비롯한 것은 아님
- 징역형 형량 기준이 거의 완비된 이상, 당초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여건 또한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음

#### ● 예측가능성 확보

- 형종의 선택 기준은 ① 기소 형식(구약식 / 구공판), ② 형 선택(벌금형 / 징역형)을 좌우하는 기준으로서 형사 절차의 합리적 진행 담보
- 징역형이나 벌금형 선택, 확정에 따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생길 경우(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법정 결격사유, 일반 기업의 취업규칙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 제공

#### ● 체제 완결성

- 징역형 양형기준은 구공판 사건 중 약 92% 대상으로 완비



- 벌금형 양형기준 또한 적어도 형의 선택 기준은 체계적 정립 필요함

▣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 고려, 범죄군별 개별적으로 정함

● 벌금형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별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징역형 양형기준을 전제로 그 양형기준에서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중 특정 영역에 형종 선택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대신 개개 범죄군별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일한 범죄인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각 대유형별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달리 설정되어 있음

대유형1(매수 및 이해유도)	소유형1~4의 감경구간에서 선택
대유형2(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감경구간은 벌금형만, 기본·가중구간은 선택
대유형3(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소유형1·2의 감경구간은 벌금형만 소유형1·2의 기본구간, 소유형3의 감경·기본구간은 선택
대유형4(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소유형1·2의 감경·기본구간은 벌금형만 소유형1·2의 가중구간은 선택

- 감경·기본·가중 영역 각 구간에 벌금형을 추가할지 여부는 범죄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표와 별개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표를 작성함

이 타당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교통범죄, 그 중에서 교통사고치상 유형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한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의 양형기준은 구공판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인 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구약식 처분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상해 정도, 과실,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된 양형이 이루어져 왔음. 그럼에도 기존 양형기준의 3단계 구간에 따라 징역형 양형기준과 합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현 단계에서 기존의 징역형 양형기준을 전제로 어떠한 구간에 벌금형을 넣을 것인지를 미리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향후 각 범죄군별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2] -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 3.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벌금형 양형기준에는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포함

- 입법 취지 / 예측가능성 확보 / 체제 완결성 등 사항은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에서 살핀 논거가 그대로 적용됨
- 형종 기준과 별도의 독자적 기준 필요
  - 벌금형은 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만 집행할 수 있고, 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

- 
-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500만 원) 범위 안에서만 벌금형을 사회봉사 집행으로 대체하는 신청을 할 수 있어 기준 정립이 필요함
- 벌금액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갈리는 범죄도 다수임

#### ■ 설정 원칙

- 종전 양형 실무 기반 + 규범적 조정
  - 기존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설정과 동일한 방식임
-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
  - 권고 형량의 영역 결정에 필요한 인자는 범죄군별로 다르기 마련이어서 하나로 아우르는 것은 곤란하므로 개별 양형기준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양형기준의 체계적 일관성 확보
  - 종전 징역형 양형기준에서 채택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양형기준의 전체적 체계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3] -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 4.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 ■ 벌금형 집행유예 현황

- 2018년 도입 → 전국 기준 매년 1% 남짓에서 활용

- 벌금 100만 원 이하에 절반 이상 분포, 집행유예 기간은 모두 2년 이하

#### ▣ 양형 실무 축적 후 재논의

- 벌금형 집행유예는 납부능력 부족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범 예방을 위한 종전 징역형 집행유예와 출발점이 다름
- 집행유예는 징역형 중 60% 이상 활용될 만큼 빈번하나, 벌금형에서는 1% 남짓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 자체가 미미함
- 현행 선거범죄 양형기준도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고, 아직 양형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 현행 징역형 양형기준처럼 양형인자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집행유예 기준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준은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서 설정함이 타당함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4] -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5.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 ▣ 법원조직법

#####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을 규정함
- 또한,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 이유 기재 의무도 면제

#### ■ 즉결심판 사건: 적용 배제

- 절차의 특수성
  - 즉결심판 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심판하는 절차로서,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만을 다루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만한 엄격한 절차로 보기 어려움
  - 형량 범위가 작아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도 거의 없음

#### ■ 약식명령 사건: 적용 배제

- 절차의 특수성
  - 약식절차의 경우 검사가 청구한 서면심리에 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대심 구조가 아니므로 공정한 양형심리가 곤란함
  -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양한 양

---

형인자 유무를 충분히 심리하기 어려움. 이러함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양형기준의 실효성 미확보

- 일정한 양식에 의한 재판서를 작성할 뿐,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실효적인 수단이 없음

- 업무 부담 급증

- 약식명령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약식명령 청구 및 심사 시에 모든 사건을 양형기준에 맞추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절차의 신속성은 크게 떨어지고, 약식명령 재판 담당 법관과 청구 검사의 업무량 과중으로 이어짐
-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큰 업무 부담의 증가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적용 포함

- 공판절차 진행

-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로 종결하므로 그 이유를 통해서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판절차회부 사건과 균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벌금형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이상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공판청구 사건 또는 공판절차회부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특수성

- 약식명령의 양형만 다루는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건

---

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더욱 필요함

-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함

#### ■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적용 포함

##### ● 구공판 사건과 동일함

-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은 구공판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각종 특칙(청구 취하, 형종 상향 금지 등)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공판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됨

#### ■ 구공판 사건: 적용 포함

##### ● 공소제기의 원칙적인 모습

- 구공판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벌금형 양형기준이 적용됨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5] -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6.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

---

## ■ 선정 기준

### ● 벌금형의 빈도

- 벌금형 건수, 징역형 대비 벌금형 비율 등이 높은 사건을 가급적 선정함

### ● 벌금형의 법정형

- 상한 3,000만 원 이상, 하한 1,000만 원 이상 등 고액 벌금형 범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 벌금형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 벌금형에 따른 공무담임권 등 상실, 정지를 비롯한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범죄도 선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 ● 범죄 자체가 띠는 사회적 중요성

- 범죄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벌금형 양형기준을 완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선정 요소로 고려함

## ■ 최초 설정 대상 범죄군

### ● 교통범죄

- 2019년 구약식 전체 498,472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81,554건(1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46,588건(9.35%)으로 매년 1, 2위를 놓치지 아니할 만큼 빈번함
- 벌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 벌금만 다투면서 항소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그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부분이 위헌



---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행위는 여전히 다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 또한 온존하는 상황임

-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무제한이고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등 비례원칙 위반을 주된 이유로 삼았기에 그 취지에 따라 이미 2021. 12. 10.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범죄전력을 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고(의안 번호 2113848),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제 개정이 이루어져 위헌 결정 받은 가중처벌 규정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도 상당함
- 이번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설정 범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사회적 중요성을 띤 범죄를 포함하고,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 양형기준을 함께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6] -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이하 여백)

## IV.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정리

구분	원칙 문구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이하 여백)